

감 사 보 고 서

본인은 2026년 1월 7일 사단법인 대한택견회(이하 '법인')의 202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감사하였으며,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시사의 방법에 의하여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상기 결산서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 기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법인의 정관 및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 관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사항으로 법인의 업무 및 회계처리과정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 계정과목 명칭 변경

법인이 사용중인 '퇴직적립금' 계정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납부한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이라는 용어는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하여 예치하는 의미이므로, 적립금으로 표시된 결산서를 보는 사람이 사실관계와 다르게 인식할 위험이 있으니 이를 '퇴직연금' 계정과목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2. 기본재산 압류와 추심

법인은 채권자 이장열과의 해고무효소송과 관련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습니다.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않은 기본재산 경매의 효력을 부인한 대법원 판례(대판 자65마704, 1967.2.22)를 고려할 때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않은 압류와 처분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류/추심으로 법인이 부담할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기
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두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7일

감사 
최 호 윤